

## 서면브리핑

2014년 10월 23일(목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 안건]

가. 지역방송팀 임필교 팀장(1450)

# 2014년 제48차 위원회 결과

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

### [의결안건]

가. 「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정안에 관한 건 (붙임 참조)

- 「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」이 시행됨('14.12.4)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▲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·시행 ▲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 ▲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정안을 의결함

## [붙임]

### <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>

#### 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(안 제2조)

-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방송사업자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-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함

#### ②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활용 (안 제3조)

-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
- 기금이 지원 목적 및 기준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도록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음

#### ③ 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(안 제4조)

- 지역방송발전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을 보조할 경우 사업의 내용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함

#### ④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의 추천 (안 제6조)

- 위원 선임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

5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(안 제9~10조)

- 특정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
-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

6 권한의 위임·위탁 (안 제12조)

-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조사·연구·인력양성·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등 일부 업무를 사업수행 능력 및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